

1. 개정이유

최근 여름철 공공수역에서 녹조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원 및 용수의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(T-P) 저감이 필요함

이에,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총인(T-P)을 줄이고,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인(T-P) 항목의 기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(별표 1 관련)

- 1) 종전에 1일 하수처리용량 500m³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역구분(I ~ IV)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였으나, 최근 기후변화, 지구온난화에 의한 극심한 폭염 등으로 녹조 현상이 심해짐
- 2)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저감을 위해 수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10,000m³ 이상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인(T-P)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
- 3) 이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생태적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녹조 발생 저감과 안전한 용수 확보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 심사 결과, 행정내부 규제

규제심사 비대상
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1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2)를 1)로 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 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

구분		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BOD) (mg/L)	총유기 탄소량 (TOC) (mg/L)	부유물질 (SS) (mg/L)	총질소 (T-N) (mg/L)	총인 (T-P) (mg/L)	총대장균 군수 (개/ml)	생태 독성 (TU)
1일 하수처리용량 10,000m³ 이상	I 지역	5 이하	15 이하	10 이하	20 이하	0.2 이하	1,000 이하	1 이하
	II 지역	5 이하	15 이하	10 이하	20 이하	0.2 이하	3,000 이하	
	III 지역	10 이하	25 이하	10 이하	20 이하	0.2 이하		
	IV 지역	10 이하	25 이하	10 이하	20 이하	2 이하		
1일 하수처리용량 500m³ 이상 10,000m³ 미만	I 지역	5 이하	15 이하	10 이하	20 이하	0.2 이하	1,000 이하	1 이하
	II 지역	5 이하	15 이하	10 이하	20 이하	0.3 이하	3,000 이하	
	III 지역	10 이하	25 이하	10 이하	20 이하	0.5 이하		
	IV 지역	10 이하	25 이하	10 이하	20 이하	2 이하		
1일 하수처리용량 50m³ 이상 500m³ 미만		10 이하	25 이하	10 이하	20 이하	2 이하		
1일 하수처리용량 50m³ 미만		10 이하	25 이하	10 이하	40 이하	4 이하	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